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내규안

1. 제정이유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에 따라 대법원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설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대법원 소관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법등기국 및 전산정보관리국에 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법원행정처 각 실·국,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은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위원회에서 심의함(안 제2조제1항 및 제3항)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4명을 포함하여 구성함(안 제3조제1항)
- 위원회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 확정,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안 제6조)
- 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방식은 대면 심의가 원칙이나 재난 상황 등 대면 심의가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상 회의시스템을 이용한 심의 또는 서면 심의 방식으로 개최

할 수 있음(안 제7조제4항 및 제6항)

- 내규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름(안 제10조)

3.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내규안

붙임과 같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내규안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대법원 소관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법등기국, 전산정보관리국에 각 위원회를 둔다.

② 각 위원회별 심의대상 사업은 회계 및 소관 업무 관련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③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법원행정처 각 실·국,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의 심의 대상 사업은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4명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내부위원은 사법지원실, 사법등기국, 전산정보관리국의 심의관 또는 담당관(서기관)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되, 사법등기국, 전산정보관리국에 설치된 위

원회의 내부위원은 각 동일인으로 지명한다.

⑤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소프트웨어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6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국가기관 등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이전에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할 경

력이 있는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기타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사법등기국,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 소관 국장이 지명하고,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 소집, 위원 수당 지급 등 업무를 담당한다.

③ 서기는 위원회 심의 대상 사업의 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심의자료 준비 및 발표, 심의결과 정리 등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심의사항) 위원회는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과업내용 확정
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3.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
4. 적정 사업기간 산정
5. 소프트웨어사업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제7조(심의 및 의결) ① 위원회 심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사업부서에서는 사업계획서 등 심의자료를 심의일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심의일 3일 전까지 심의안과 심의자료를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한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외부위원은 2인 이상 출석을 개의 요건으로 한다.

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은 내부 및 외부위원 각 1명이 사전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심의 방식은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화상 회의시스템을 이용한 심의 또는 서면 심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1. 재난 상황 등 대면 심의가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

3.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내규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심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부 칙

이 내규는 즉시 시행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정보화심의관실

연락처

(031) 724-9121